

문화유산사범 제보·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5일
청구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 :)	
청구원인	사건명		
	공적내용		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 귀하

첨부 서류	제보자	1.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1부(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1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)	수수료 없음
	체포 공로자	1. 기소유예 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공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서류 등) 1부 3.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1부(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1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)	

처리절차

청구서 작성 청구인	→	접수 처리기관: 시·군 및 시·도, 국가유산청	→	입수문화유산 평가	→	포상금액 결정	→	통보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-	---	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